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6. 27. 정부

나. 회부일자 : 2024. 6. 2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8.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9.25)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10.29)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도지사가 관리·운용하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천우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이는 법제처의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일괄개정 추진되는 81개 법률안 및 65개 하위법령¹⁾ 중 하나임.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보고’는 행정용어로서 “같은 부내의 상급기관이 지시 요청한 근거에 따라 하급기관이 그 내용이나 결과를 문서나 구두로 알리는 행위”로 상하관계에서 하급자(기관)가 상급자(기관)에게 쓰는 용어인 반면,

‘통보’는 ‘통지보고’를 줄인 행정용어로서 “같은 부서의 동급기관끼리 행정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그 내용이나 결과를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주는 행위”로 평등한 관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임.

1)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① **자치입법권 강화** 측면에서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과 ② **지방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지방 사무에 관한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 협의 또는 보고를 사후 통보, 의견 제출 등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에 첨부.

종래의 학교용지법에 ‘보고’라고 규율되어 있던 것은, 입법 당시 특정목적의 부담금인 학교용지부담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일률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주무부처의 지도·감독을 위한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의 통제를 받기보다는, 양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맺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또한 대법원 판례²⁾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사무의 성질상으로도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를 처리한 결과를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보고’ 대신 ‘통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또한, 종래에 시·도지사가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현재 시·도지사는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단순 제출할 뿐, 보고는 하지 않고 있으므로

2)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5조 제1항은 시·도지사(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6조 제3호는 시·도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은 교육에 관한 사무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설치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이러한 법 적용의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에서도 개정의 취지가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문정복)

정부 제출(2건) 및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 반영 폐기